

농작물·가축(소)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 위임계약서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협회회원(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 손해평가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을”이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위임 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위임의 범위)

“갑”은 “갑”이 인수한 보험과 관련된 손해평가에 대하여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을”은 손해평가업무에 관한 자료를 NH손해보험(지역농협)에서 인수받아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위임 받은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을”은 동 업무의 완료시까지 조속히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이행)

- ① “을”은 위임받은 손해평가 업무를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험사업자(NH손해보험) 또는 보험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손해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증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협회의 정관 및 회원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①항, ②항, ③항을 위반한 경우 본 계약기간중 위임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평가결과 제출)

- ① “을”은 손해평가업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의 성질, 가입자의 정당하지 않은 요청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평가결과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지역(품목)농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2조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상없이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험가입자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한 후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받아 모바일입력(NH 농협손해보험 현지조사시스템, 본 협회의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시스템) 및 지역(품목)농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손해평가업무 수입당일(영업시간 초과 시 그 익 영업일 오전)내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진행과정 등을 안내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보험조사 및 손해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피보험자 및 피해자 등 사고 관련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손해평가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 규정 등 손해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고, 유선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녹취 등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 관련법령, 손해평가요령,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회의 관련규정, 협회 및 손해보험 사업자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의 확인 및 보고)

- ① “갑”은 “을”에게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보고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손해조사비지급)

- ① “갑”은 “을”이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을”에게 지급한다.
- ② “갑”은 제 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회를 통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10%~2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숙식비 및 교통비 등 실제로 사용된 소모성 경비는 제외한다.
- ③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을”은 월간 손해조사비(전산입력일자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력된 조사에 한함)에 대하여 익월에 내역(조사종류, 조사건수, 조사일자, 조사자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상여부를 “갑”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제3항에 의해 “갑”이 손해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한 손해조사비의 내역이 잘못되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 “을”이 다음 각1호에 해당될 때는 계약은 해지된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수임인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동 조에 따라 위축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7. 본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9. “을” 이 “갑” 에게 제출한 자료(자격확인 서류 등)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10. “을” 이 근거 없는 투서 등으로 협회 또는 직원을 비방한 경우
11. 그 밖에 본 계약사항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1조(손해배상)

“을” 은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과 “을” 의 협의를 거쳐 상관관계에 따라 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기 타)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 손해평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

본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계약서에 대한 동意的 의사표시로서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6-1, 영미빌딩 5층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이 광 하 (인)

[수임인]

지 회 :
회원종류 : 손해평가사
성 명 : (인)
주 소 :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 손해평가 보안서약서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귀중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실 경우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농작물·가축(소)손해평가와 관련되어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위탁받은 업무에 한해 이용하고 처리할 것이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자택 및 개인 소유장소 내에 보관치 않는다.
2. 나는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나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 나는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5. 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조치
 - 2)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점검 조치
 - 3)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
6. 나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수탁자 점검하며,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지체없이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게 제출한다.
7. 나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 및 경위,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보고한다.
8.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농작물·가축(소)손해평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치 않는다.
9. 나는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문서권한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수탁자 준수한다.
10. 나는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한다.
11. 나는 농작물·가축(소)재해보험 손해평가 종료 후 협회에서 손해평가관련으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 전의 손해평가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협회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원 관리 카드

성 명 :

1. 품목별 전문 손해평가 분야(해당 품목 전문성을 보유하신 회원 표기)

평가 분야	손해평가 분야	품 목	전문품목 작성 (중복가능)
농작물 재해보험	1. 과수	사과·배·감귤·단감·뽕은감·복숭아·포도·밤·참다래·자두·매실·대추·복분자·오디·오미자·무화과·유자	
	2. 채소	양파·고추·마늘·양배추	
	3. 식량작물	벼·밀·감자·콩·고구마·옥수수	
	4. 특용작물	차·인삼·표고버섯·느타리버섯	
	5. 시설작물	시설하우스·시설(딸기·오이·참외·토마토·국화·수박·장미·꽃고추·호박·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가축재해 보험	대가축	소(한우, 육우, 젖소), 말	
	중가축	돼지, 염소, 사슴, 양(염소)	
	가금, 기타	닭, 오리, 거위,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꿀벌, 토끼, 오소리	

2. 손해평가(조사) 활동 희망 지역(거주 지역을 포함하여 활동 가능한 지역 작성)

순번	희망 지역	
	시도	시군
1순위		
2순위		
3순위		

3. 손해평가 활동 경력(손해평가 활동 경력이 있는 회원만 표기)

손해평가 경력	
활동 기간(00년00월 표기)	최근 3년간 연 평균 활동 횟수
	'00년(회), '00년(회), '00년(회)